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전문위원 김 완 섭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 제안이유

자치단체 유사사무간 수수료 격차를 방지하고 수수료 적기 현실화를 통해 자치단체의 재원 운영의 안정성을 기하고자 제정 추진한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2006년 6월 29일 공포되어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기에 동 규정에 맞게 우리구 수수료 요율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 근거법령 개정사항 등 반영

○ 제1조 본문 중 지방자치법 제127조 삭제(사용료 규정)

○ 제6조 중 법령명 수정(국민기초생활보장법)

나. 제3조 별표 중

○ “나” 목 재산 및 지방세에 관한 증명

(1) 지방세납세증명 과

(3)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발급 수수료 액을 기존 500원에서 800원으로 변경하고자 함

○ “다” 목 건축 및 주택에 관한 사항

(2)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 확인서

발급 수수료 액을 기존 500원에서 800원으로 변경하고자 함.

3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제130조제1항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한다” 라는 규정에 따라 행정자치부가 “지방자치법 제130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 기준에 관한 규정”을 2006년 6월 29일 제정하고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어 동 규정에 맞게 우리구 수수료 요율을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적법성에 대해서는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 본 조례안이 제출되기 이전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2006년 8월 3일부터 8월 22일

까지 19일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 입법예고하여 의견 수렴을 하는 등 제반 행정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

○ 지방세납세증명 등을 전국적으로 통일하여 동일한 행정서비스에 대하여는 동일한 수수료를 받도록 하여 주민 불편이 해소되고 자주재원 확충에도 기여될 것으로 예상되고

○ 그리고 상위 근거법령 개정사항과 관련 용어를 조정하였으며 다만, 개정안 제6조에 수급권자의 범위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부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것을 같은 법 “제5조”로 수정하는 것이 합당한 수급권자의 범위를 정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붙임 : 1.관련법령1부.
2. 수정 대비표 1부

2006. 9. 8

보고자 : 김 완 섭

〈관 련 법 령〉

□ 지방자치법

第127條 (使用料) 地方自治團體는 公共施設의 이용 또는 財産의 사용에 대하여 使用料를 徵收할 수 있다.

第128條 (手數料) ①地方自治團體는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事務가 特定人을 위한 것일 경우 그 事務에 대하여 手數料를 徵收할 수 있다.

②地方自治團體는 國家 또는 다른 地方自治團體의 委任事務가 特定人을 위한 것일 경우 그 事務에 대하여 手數料를 徵收할 수 있다.

③第2項의 規定에 의한 手數料는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收入으로 한다. 다만, 法令에 달리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0조(사용료의 징수조례 등) ①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다만, 국가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 및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6.1.11>

② 생 략

③ 생 략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수급권자의 범위) ①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도 생활이 어려운 자로서 일정기간동안 이 법이 정하는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 이 정하는 자는 수급권자로 본다.

③제1항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제6024호,1999.9.7>

제5조 (수급권자의 범위에 대한 적용특례) 이 법 시행일부터 2002년 12월 31일까지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을 기준으로 하여 매년 정하는 수급권자 선정기준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44조 (일반동산문화재의 범위) 법 제7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21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이 준용되는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재중 동산에 속하는 문화재"(이하 "일반동산문화재"라 한다)는 전적·서적·판목·회화·조각·공예품·고고자료·자연사자료 및

민속자료로서 역사상·예술상 보존가치가 있는 것으로 하되, 그 범위는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0.1.3, 1993.3.6, 1999.5.24, 1999.6.30> [전문개정 1985.5.10]

□ 지방자치법 제130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제정 2006.6.29 대통령령 제19567호]

제1조 (목적) 이 영은 「지방자치법」 제13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하는 수수료 중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수수료의 징수기준) 「지방자치법」 제13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하는 수수료 중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종류 및 그 금액은 별표와 같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는 별표에 따른 수수료 금액의 100분의 10의 범위 안에서 조례로 이를 가감 조정할 수 있다.

부칙 <제19567호, 2006.6.29>

①(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수수료 징수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에 따른 수수료의 금액은 제2조에 불구하고 그 수수료에 관한 조례가 새로 제정 또는 개정되어 시행되기 전까지는 종전의 조례를 적용한다.

[별표] 수수료의 종류 및 금액(제2조 관련)

종류	금액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개별공시지가확인서의 발급 수수료	1 필지당 800원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 및 제6항에 따른 개별주택가격확인서의 발급 수수료	1 주택당 800원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공동주택가격확인서의 발급 수수료	1 주택당 800원
「지방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지방세 납세증명서의 발급 수수료	1 건당 800원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토지이용계획 확인서의발급 수수료	1 필지당 1,000원(칼라 발급 또는 도면 첨부의 경우에는 1,500원)